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
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1월 12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행정자치부 정 종 섭
장 관
(금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2689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에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의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편제5장(제118조의13제2항은 제외한다)에서 같다]에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게재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17조의7제3항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라 한다)과 투자자 간, 투자자 상호 간에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후에 채무증권, 지분증권 또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는 새로 발행되는 증권에 대하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

- 1. 투자자에게 그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 2. 제1호의 행위 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를 분담하는 행위
- 3. 투자자로부터 그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받아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제14조의5(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① 법 제9조제2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 1. 주권상장법인(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하는 자. 다만,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활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법 제9조제27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투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할 것
 - 나. 중소기업이 1개 이상의 다른 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포함한다)과 공동으로 가목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제45조제2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법 제9조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해지 업무(실명 확인 업무는 제외한다)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인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해지 업무, 법 제117조의11에 따른 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업무 및 청약의 접수·전달·집행·확인 업무에 한정한다.

제2편에 제5장(제118조의4부터 제118조의23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제118조의4(등록요건) ① 법 제117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117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2.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3.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③ 법 제117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 라.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④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장(제118조의16제1항제2호라목 및 제118조의18제3항제1호·제2호는 제외한다)에서 같다]는 별표 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인가신청일”은 “등록신청일”로, “인가 받으려는”은 “등록하려는”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
2. 법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분할하거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 ⑤ 법 제117조의4제2항제7호에서 “경영건전성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 ⑥ 법 제117조의4제2항제8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이하 이 장에서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 법 제4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8조의5(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17조의4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서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 대주주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관한 사항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법 제117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3.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등록신청일(금융투자업자 및 겸영금융투자업자의 등록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을 말한다) 현재 대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8. 대주주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법 제117조의4제2항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17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118조의6(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법 제117조의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117조의4제2항제2호의 경우: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117조의4제2항제6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유지할 것
 - 가.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 및 3)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 나. 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3) 및 제4호라목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보고, 제4호라목 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본국의 사법기관으로부터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본다.
 - 다. 법 제117조의4제2항제6호에 따른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이 호 나목의 요건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에 “최대주주”는 각각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본다.
- 제118조의7(명칭의 제한) 법 제11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financial investment (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18조의8(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117조의6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고유재산운용업무(제50조제1항에 따른 고유재산운용업무를 말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련한 보고 등 법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이해상충의 파악·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8조의9(증권의 청약) ① 법 제117조의7제4항에서 “투자자의 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받는 방법
2.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방법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② 법 제117조의7제6항에 따른 증권(외국 증권)의 청약은 새로 발행되는 증권(외국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으로 한다.

제118조의10(그 밖의 영업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17조의7제7항 단서에서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자가 증권(외국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의 권유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2. 법 제117조의7제5항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② 법 제117조의7제8항에 따른 증권(외국 증권)의 청약 및 발행에 관한 내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증권(외국 증권)의 취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전체 투자자의 청약금액 및 수량

나. 전체 투자자로부터 받은 청약증거금(제118조의11제1항에 따른 청약증거금을 말하며, 이하 “청약 증거금”이라 한다) 총액

다. 그 밖에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의 세부사항

2. 증권의 발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전체 투자자의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법 제117조의10제3항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인지 여부

나. 전체 투자자로부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실제 납입될 증권 대금

다. 그 밖에 증권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

3. 증권의 배정 및 그 대금 납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한 해당 투자자에게 배정된 증권의 가액 및 수량

나. 증권 대금의 납입기일

다. 그 밖에 증권의 배정 및 그 대금 납입에 관한 사항

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청약증거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그 금액 및 반환 일정 등에 관한 사항

제118조의11(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 ① 법 제117조의8제2항에 따른 청약증거금은 투자자로부터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받을 당시에 그 청약과 관련하여 받은 금전으로 한다.

② 법 제117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18조의12(청약증거금의 예외적인 양도 등의 사유) 법 제117조의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청약증거금 관리기관(법 제117조의8제2항에 따른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예치 또는 신탁한 청약증거금을 양도하는 경우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내용에 따라 양수회사에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청약증거금을 양도하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18조의13(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 ① 법 제117조의8제5항에서 “등록취소, 해산결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폐지가 승인된 경우

5.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사유, 지급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중앙기록관리기관(법 제117조의13의 중앙기록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18조의14(예치·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등) ① 법 제117조의8제6항에 따라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청약기간이 끝난 후 법 제117조의10제3항에 따라 발행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청약증거금 중 제118조의10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실제 납입될 증권 대금을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증권 대금을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청약증거금 중 투자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그 금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17조의10제3항에 따라 발행이 취소된 경우

2. 법 제117조의10제8항 전단에 따라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철회한 경우

3. 증권의 청약기간이 끝난 후 제1항의 청약증거금이 제118조의10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실제 납입될 증권 대금을 초과한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약증거금의 지급·반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2항 후단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증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2. 제3항 후단에 따라 투자자에게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3. 법 제117조의8제5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청약증거금을 우선 지급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 또는 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8조의15(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 ① 법 제117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모집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과 해당 모집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가액 각각의 합계액이 7억원 이하인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각각의 합계액이 7억원 이하인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제118조의1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으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면서 예탁결제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자가 증권 대금으로 납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그 증권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할 것
2. 제1호에 따른 예탁 또는 보호예수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증권을 인출하거나 다른 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할 것

제118조의1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①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 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증권의 발행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모집에 관한 일반사항
 - 나. 모집되는 증권의 권리내용
 - 다.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 라. 자금의 사용 목적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 가. 회사의 개요
 - 나. 사업의 내용, 그 밖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를 기재한 서류. 이 경우 법 제117조의10제1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별로 그 서류의 중요사항이 적정하게 기재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음의 확인 또는 의견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이사의 확인
 - 2) 공인회계사의 확인과 의견표시
 - 3)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 라. 회사의 기관, 대주주(법 제23조제1항의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제118조의18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임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게재를 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미 게재된 것과 같은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고하라는 뜻을 게재함으로써 제1항의 게재를 갈음할 수 있다.
 - ③ 법 제117조의10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증권의 모집이 끝난 후 지체 없이 그 모집 실적에 관한 결과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2.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137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서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둘 이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모집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에 게재할 것. 다만,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모집한 증권의 상환 또는 소각을 완료한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사항에 관한 서식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⑤ 법 제117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 ⑥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법 제117조의10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정정하고,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정정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제13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경우
 3. 제130조제2항제3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제118조의17(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① 법 제117조의10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 ② 법 제117조의10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문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
 3. 그 밖에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③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소득세법」 제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 나.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과 근로소득금액(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2. 법인인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④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가목의 경우: 1천만원
 2.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나목의 경우: 2천만원
 3. 법 제117조의10제6항제2호가목의 경우: 2백만원

4. 법 제117조의10제6항제2호나목의 경우: 5백만원

⑤ 법 제117조의10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전문투자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증권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주주.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해당 증권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해당 증권이 주권인 경우로 한정한다)

4. 해당 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인 경우 그 증권을 매수하려는 자

가. 증권시장

나. 협회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를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시장

5. 그 밖에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고 투자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실을 알고 그 증권을 매수하는 투자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⑥ 법 제117조의10제7항 단서에 따라 다른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매수한 자(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그 증권이 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된 날부터 1년 동안 그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매도,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17조의10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증권을 매도할 수 있다.

⑦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한 투자자가 법 제117조의10제8항에 따라 증권의 청약기간 종료일까지 그 청약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그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8조의18(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 ① 법 제117조의11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하는 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1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1. 모집예정금액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 및 그 사용 목적이 제118조의16제1항제2호나목의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청약금액이 법 제117조의10제3항에 따른 모집예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조달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법 제117조의11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 및 임원의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증권을 모집하기 전까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 및 임원이 그 업무와 관련된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3.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사항에 관련된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
 - 가.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조직운영 및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
 - 나. 증권의 발행을 결의한 주주총회(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발기인 총회를 말한다)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록의 사본, 그 밖에 증권의 발행 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라. 증권의 발행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마.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발행인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게재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가. 수상(受賞) 또는 특허 출원
 - 나.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술평가
 -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파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
 5.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언론매체의 보도내용 등을 게재한 경우 그 진위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18조의19(배상책임을 지는 자) 법 제117조의12제1항제4호에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그 밖에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18조의20(중앙기록관리기관) ① 법 제117조의13제1항에서 “의뢰 또는 주문의 내용,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상호 및 명칭
 - 나.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 다.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 그 밖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자료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의뢰에 관한 정보로서 증권의 모집가액·청약기간, 그 대금의 납입기일, 그 밖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의뢰에 관한 자료
 3. 투자자의 청약에 관한 정보로서 증권의 청약금액 및 수량, 청약일, 그 밖에 청약에 관한 자료
 4. 투자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투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명칭을 말한다)
 -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를 말한다)
 - 다. 해당 투자자가 제118조의1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인지 여부
 - 라. 그 밖에 투자자에 관한 자료
 5. 법 제117조의7제8항에 따라 증권의 청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118조의10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6.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
 - 가.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한 사항
 - 나. 가목의 사항에 관하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 간, 투자자 상호 간에 교환된 의견
 - 다. 제118조의16제3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에 부수하는 자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에 관한 자료
 9.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②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법 제117조의1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의 집중관리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의 관리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등에 대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의 제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 ③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그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2. 정관 및 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그 업무를 하기에 충분할 것
 3.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내부통제기준과 업무방법을 마련할 것
-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118조의21(중앙기록관리기관의 발행한도 등의 관리 업무 등) ①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법 제117조의13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자의 투자한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별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자별 투자한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요청·수집 및 분석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의 발행한도 또는 투자한도와 관련하여 자신의 증권 발행 또는 투자 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경우 그 회신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 또는 자료의 보관·관리

②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법 제117조의13제3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제공받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할 것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10년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관할 것

③ 법 제117조의13제4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18조의14제4항에 따라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의 요청을 받아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개인정보 주체의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18조의22(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법 제117조의14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8조의23(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사항) 법 제117조의15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7조의15제1항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내용을 포함한다)을 해당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공개할 것

2. 법 제117조의1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한 경우 법 제426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조사 절차에 협력할 것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6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모집 또는 매출(법 제130조 본문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은 제외한다)”를 “모집 또는 매출(법 제117조의10제1항에 따른 모집과 법 제130조 본문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87조의2제1항제1호 중 “법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를 “법 제13조, 제14조, 제19조 및 제117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3조”를 “법 제23조 및 제117조의6”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회 또는 법 제288조의2에 따른 장외과생상품심의위원회(제4호의 사무만 해당한다)”를 “협회”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18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에 필요한 사무

제387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3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한다.

제387조의2에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7조의7제9항에 따라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관한 사무

2. 법 제117조의13제1항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에 관한 사무

⑮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7조의13제1항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관한 자료의 취득 사무

2. 법 제117조의13제2항에 따른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의 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117조의13제3항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관한 자료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17조의13제4항에 따른 자료제공에 관한 사무

⑯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18조의13제2항에 따른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에 관한 사무

2. 제118조의14제3항에 따른 청약증거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별표 5 중 제1호의4부터 제1호의6까지, 제1호의8 및 제1호의9를 각각 제1호의24부터 제1호의28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의4부터 제1호의23까지, 제20호의2 및 제2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법 제11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한 경우

1의5. 법 제117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신용 또는 투자 여부에 대한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이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한 경우

1의6. 법 제117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1의7. 법 제117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청약을 한 경우

1의8. 법 제117조의7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한 경우

- 1의9. 법 제117조의7제8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1의10. 법 제117조의7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1의11. 법 제117조의7제10항 각 호 외의 방법으로 증권의 청약을 권유한 경우
- 1의12. 법 제117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은 경우
- 1의13. 법 제117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상계·압류하거나 양도·담보제공한 경우
- 1의14. 법 제117조의8제5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
- 1의15. 법 제117조의9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경우
- 1의16. 법 제117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거나 그 밖에 정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의17. 법 제117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발행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 1의18. 법 제117조의10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게재 내용을 정정하지 않은 경우
- 1의19. 법 제117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지분을 매도한 경우
- 1의20. 법 제117조의10제7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지 않거나 증권을 매도 또는 양도한 경우
- 1의21. 법 제117조의10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않은 경우
- 1의22. 법 제117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 1의23. 법 제117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0의2. 제118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 20의3. 제118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 별표 20에 제25호의2부터 제25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22호의2를 제122호의3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1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5의2. 법 제117조의4제4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내용의 검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 25의3. 법 제117조의6제1항에 따른 대주주 변경 보고의 접수
- 25의4. 법 제117조의1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위반자의 법 위반 사실 신고 접수
- 122의2. 제118조의8제3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권고

부 칙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을 하려는 창업자·중소기업 등이 증권을 발행하여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창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로써 일정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 사업에 대한 투자자 상호 간의 의견 교환 등을 통하여 의사가 형성되는 투자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로 그 증권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제도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을 도입하기 위하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 사이에 일정한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여 증권의 발행을 중개(온라인소액투자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48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되는 창업자·중소기업 등의 범위,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공시규제가 완화되는 증권의 발행한도,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증권 발행에 따른 조치사항, 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의 방법(제14조의4제1항 신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을 통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에 증권의 발행조건,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의 정보를 게재하고 그 정보에 관하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 간, 투자자 상호 간에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장소에서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후에 증권을 발행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수 투자자의 투자의사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 간의 신뢰관계 등이 건전하게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되는 창업자·중소기업 등의 범위(제14조의5 신설)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창업자를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주권상장법인이 아니면서 금융업·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하는 자로 정하고,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난 경우에도 주권상장법인이 아니면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해당 창업자·중소기업 등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함.

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요건 등(제118조의4부터 제118조의6까지 신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되려는 자는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과 함께 위험관리, 금융사고 예방,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의 파악·평가·관리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전산요원, 전산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법처벌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을 등록의 요건으로 함으로써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제(제118조의9 및 제118조의10 신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기 전에 그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서명·전자서명,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투자자가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의 권유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경우 외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할 수 없도록 함.

마. 청약증거금의 예치·신탁 및 관리 등(제118조의11부터 제118조의14까지 신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받을 당시에 그 청약과 관련하여 받은 청약증거금이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되도록 하여야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다른 회사와의 합병에 따라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그 청약증거금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 외에는 그 예치·신탁된 청약증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의 취소, 해산의 결의, 파산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치·신탁된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되도록 하면서 그 지급사유,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

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공시규제가 완화되는 증권의 발행한도 등(제118조의15 신설, 제167조제1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의 권유(모집)를 하는 경우로서 증권의 모집가액과 해당 모집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가액 각각의 합계액이 7억원 이하인 경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증권신고서 제출에 관한 규제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에 관한 규제 보다 완화된 수준에서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되, 전문투자자 등이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으로부터 증권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하고 1년 동안 그 증권을 인출하거나 다른 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전문투자자 등이 증권 대금으로 납입한 금액을 위 7억원을 산정할 때 제외하도록 하며, 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의무도 면제함으로써 창업자·중소기업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때 이행하여야 하는 공시규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증권 발행에 따른 조치사항 등(제118조의16 신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그 모집 개시 전까지 모집되는 증권의 권리내용,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자금의 사용 목적, 증권의 발행한도인 7억원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별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의 대표이사의 확인, 공인회계사의 확인과 의견표시 및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각각 받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를 기재한 서류 등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결산에 관한 서류를 각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전체 투자자의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권 발행을 취소하도록 함.

아. 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제118조의17 신설)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되는 증권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을 고려하여 일반투자자는 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은 200만원, 1년간 전체 누적투자금액은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자기자본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개인 등은 그 투자한도를 각각 1천만원, 2천만원으로 높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하여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투자자,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일정한 자 등은 투자한도의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는 해당 증권을 발행한 후 1년 동안 보유한 지분을 누구에게도 매도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증권을 취득하거나 매수한 투자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투자한도의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자 또는 해당 증권을 발행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주주 등에게 해당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외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한 날부터 1년간 증권을 매도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되는 증권을 취득하거나 매수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함.

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한 사실에 대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확인의 범위(제118조의18 신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해당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하는 사업의 목적 및 내용, 모집예정금액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 그 사용 목적이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조달하기 위한 세부계획,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임원의 범죄경력 및 업무관련 소송의 진행에 관한 사항,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특허 출원, 기술평가, 기술신용정보 또는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공시규제 완화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차.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의 보관·관리 등(제118조의20 및 제118조의21 신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업종, 증권의 모집가액·청약기간, 투자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청약금액·수량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의 집중관리 업무와 더불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자의 투자한도의 관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10년간 디스크·자기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관·관리하도록 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해당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청약증거금을 관리하는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